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33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홍기원
안도걸 · 이광희 · 안호영
복기왕 · 이개호 · 허성무
최혁진 · 정진욱 · 김 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문 수리업자의 이용이 강제되어 경제적 비용 부담과 절차상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거주자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거주 기피를 초래하여 공가의 증가와 전통 생활문화 등 국가유산의 무형적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u><단서 신설></u> 가. ~ 다. (생략) 1의2. ~ 17. (생략)	제2조(정의) ----- -----. 1. ----- ----- -----. <u>다만,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u>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2. ~ 17. (현행과 같음)